

의안번호	2204337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3.
추 계 번호	24A3142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	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기관에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(제1항)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(안 제8조제1항)

-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기관에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다만, 현재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준이 다르고, 각 기관이 개정안에 따라 향후 취할 조치의 내용과 수준을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 - － 현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,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항목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평가를 받음
 - －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의 주요 이행항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에너지이용 합리화 주요 이행항목

부문	이행항목	
추진 체계	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	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
		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
	에너지 지킴이	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
건물 부문	건축물 신축·증축	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
	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
		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설치·운영
		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
		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
	고효율제품 구매	LED 조명 보급률(건물 실내 조명)
		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
		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
		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
	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	옥외 경관조명 미설치
		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
		자동절전제어장치 30% 설치
		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
		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
	에너지절감 활동	에너지진단 실시
		ESCO사업 추진
		적정실내온도 준수(동절기 및 하절기)
		개인난방기 사용 제한
		옥외광고물 심야 소등
		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
수송 부문	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	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
		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
		경차 및 환친차 전용주차면 10% 이상 확보
	에너지절감활동	승용차 요일제 시행
교육 홍보	에너지절약 교육	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
		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
	에너지절약홍보	홍보·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

자료: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별표 3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